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키움 Eastern Europe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 Eastern Europe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키움 Eastern Europe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61082)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02-789-0300)  
(위탁운용사: Danske Capital, a division of Danske Bank A/S, 해외자산위탁운용)
4.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5. 작성기준일 2015년 10월 30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5년 12월 1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총액: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Tel. 02-789-0300, [www.kiwoomam.com](http://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 Tel. 02-2003-9000, [www.kofia.or.kr](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의 기업 및 이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MSCI Eastern Europe Index × 90%] + [Call × 10%]**

주1) MSCI Eastern Europe 지수: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만든 모델포트폴리오 지수 중 동유럽관련 주식들을 대상으로 한 주가지수(지수현황은 <http://www.bloomberg.com>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주2)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

아래의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으로 다른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주식	60% 이상 (“동유럽국가 주식”에 6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에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합니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li> <li>- 다만, 러시아와 터키를 포함한 중·동부 유럽국가 또는 구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에 소재한 회사 및 동유럽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이하 “동유럽국가 주식”이라 합니다)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합니다.</li> </ul>
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다만, 위험회피목적에 위한 거래에 한합니다. 이하 “파생상품”이라 합니다)

### 2.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 전략

- 이 투자신탁은 동유럽 국가(러시아와 터키를 포함한 중·동부 유럽 및 구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에 소재한 회사 및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또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한국 및 외국의 국공채, 신용등급 BBB- 등급 이상의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외자산의 운용업무 등을 2015년 12월 1일부터 **Danske Capital, a division of Danske Bank A/S**에 위탁 운용 중입니다.

#### 2) 위험관리

- ①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관련 주식가격의 변동성, 헤지수단 및 헤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도중에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면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 주1) 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내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경우는 증거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 산출이 가능하나, 장외파생상품은 장외거래 특성상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약환을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의 특성상 장내파생상품의 환헤지 비용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주요통화[국제거래상 주요결제수단 중에서 국내 선물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 **순자산평가액 70±30%의 목표 환헤지** 수준을 유지하는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며, 주요통화 이외의 기타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 전략의 실행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스왑, 옵션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동 등으로 상기 목표 환헤지 수준의 유지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는 목표 환헤지 수준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설정/헤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 헤지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그 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③ 일부 이머징 국가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투자신탁의 자금이 납입되더라도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일부 이머징 국가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투자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와는 관계 없이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⑤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경우는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 3. 주요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아래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이머징 마켓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 투자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율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물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재 환헤지 대상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동유럽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제한된 수의 종목에 투자하게 되고, 또한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는 투자대상 국가들의 대표적인 지수들의 변동과는 별개로 투자대상인 동유럽관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와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게 되는 동유럽 관련 주식등은 국내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여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동유럽 국가주식들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2015.10.30. 현재)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전재현	1972	팀장	54개 (팀공동)	4,123억 (팀공동)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재무관리) - 한일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팀 - Won Capital Mgt. 주식운용팀 - 다임인베스트먼트 계량분석운용팀 - 자산운용협회 공시조사부 - 국민연금공단 해외증권실 - 레이투자자문 자산운용본부 - 한화생명 투자전략본부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Global운용팀장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Global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위탁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팀명 및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Ole Gotthardt	Chief Portfolio Manager	USD \$370 million	* University of Copenhagen, 경제학 석사 * Den Danske Bank, 애널리스트 * Gudme Raaschou Brokerage, 유럽 주식 펀드매니저 * Hafnia Kapital Bank, 유럽 주식 펀드매니저 * 현재 Danske Capital, 동유럽 펀드 대표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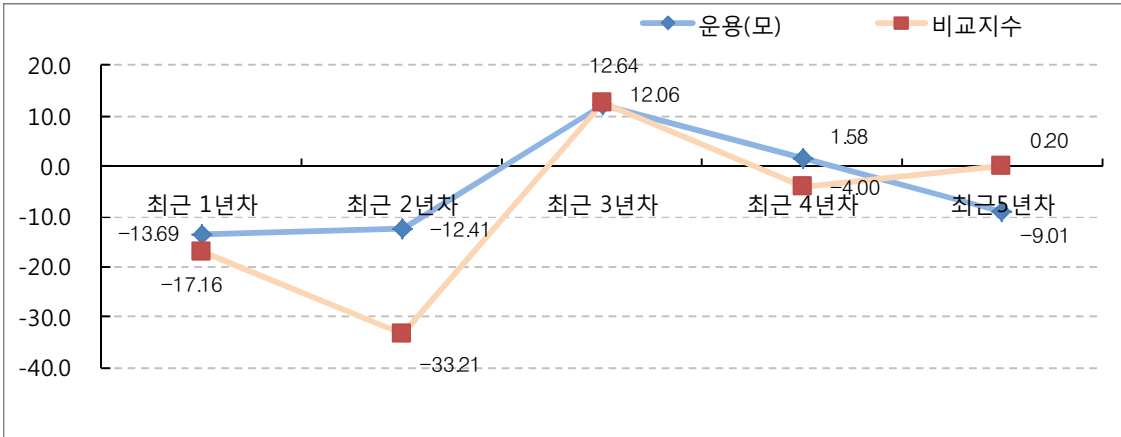
6.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4.10.31~ 2015.10.30	2013.10.31~ 2014.10.30	2012.10.31~ 2013.10.30	2011.10.31~ 2012.10.30	2010.10.31~ 2011.10.30
운용(모)	2006.10.16	-13.69	-12.41	12.06	1.58	-9.01
비교지수		-17.16	-33.21	12.64	-4.00	0.20
A1	2006.10.16	-15.46	-14.19	9.85	-0.45	-10.84
비교지수		-17.16	-33.21	12.64	-4.00	0.20
C1	2006.10.16	-15.96	-14.69	3.75		
비교지수		-17.16	-33.21	2.97		
C2	2011.01.10	-15.88	1.54			
비교지수		-17.16	-2.65			
C3	2011.01.10	-11.14				
비교지수		-15.58				
C5	2011.01.10	-15.63	-14.36	9.63	-0.65	-47.25
비교지수		-17.16	-33.21	12.64	-4.00	-5.92
C-e	2006.10.16	-15.54	-14.29	9.61	-0.77	-11.21
비교지수		-17.16	-33.21	12.64	-4.00	0.20
C-H	2007.09.19	-15.62	-14.35	9.57	-0.83	-11.28
비교지수		-17.16	-33.21	12.64	-4.00	0.20
A-e	2014.05.23	-14.34				
비교지수		-17.16				
S	2014.04.23	-14.97	-2.02			
비교지수		-17.16	-5.16			

주1) 비교지수: [MSCI Eastern Europe Index × 90%] + [Call ×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6) Class C1 수익증권은 2006년10월6일에 최초설정되었으나, 운용기간 중 Class C1 수익증권의 수탁고가 전부 인출(설정액0원) 되었다가 2013년1월25일에 재설정되었습니다. 상기 수익률은 재설정일 이후의 수익률로 최근 3년차 수익률은 9.17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2 수익증권은 2011년1월10일에 최초설정되었으나, 운용기간 중 Class C2 수익증권의 수탁고가 전부 인출(설정액0원) 되었다가 2014년4월30일에 재설정되었습니다. 상기 수익률은 재설정일 이후의 수익률로 최근 2년차 수익률은 6.05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3 수익증권은 2011년1월10일에 최초설정되었으나, 운용기간 중 Class C3 수익증권의 수탁고가 전부 인출(설정액0원) 되었다가 2015년4월30일에 재설정되었습니다. 상기 수익률은 재설정일 이후의 수익률로 최근 1년차 수익률은 6.05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5: 최근 5년차 수익률은 9.67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A-e: 최근 2년차 수익률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Class S: 최근 2년차 수익률은 6.28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 제2부. 매입·환매관련 정보

### 1. 보수 및 수수료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1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1.0% 이내	-	-	-
C1	10억원 미만 매입시	-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C2	종류 C1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	-		-
C3	종류 C2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	-		-
C4	종류 C3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	-		-
C5	종류 C4 1년이상 보유자 자동전환	-	-		-
C-I	10억원 이상 매입시	-	-		-
C-e	온라인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하는 수익자	-	-		-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보유	-	-		-
C-H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대상자	-	-		-
A-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5% 이내	-		-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합니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C-F	주 5) 참조	-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판매수수료를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주2) 2011년 1월 10일 이전 가입한 Class C2 수익증권의 변경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의 “2) 전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Class C2 수익증권, Class C3 수익증권, Class C4 수익증권, Class C5 수익증권의 전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제2부. 4. 전환절차 및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 수익증권의 전환과 관련하여 환매수수료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증권의 자동 전환을 위해 환매되는 경우 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환매수수료 면제
2. 수익증권의 전환 후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
  - 1) 전환 후 추가 납입분이 없는 경우: 환매수수료 면제
  - 2) 전환 후 추가 납입분이 있는 경우: 추가 납입 분에 대해서만 기존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적용

주5) Class C-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합니다)
2.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3.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4.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에 의한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종류)	지급비율(연간, %)							합성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 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비용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A1	1.0	0.9	0.08	0.03	0.1912	2.2012	-	0.8490	
C1	1.0	1.5	0.08	0.03	0.1858	2.7958	-	0.6394	
C2	1.0	1.4	0.08	0.03	0.1858	2.6958	-	0.9608	
C3	1.0	1.3	0.08	0.03	0.1858	2.5958	-	0.8720	
C4	1.0	1.2	0.08	0.03	0.1858	2.4958	-	0.4513	
C5	1.0	1.1	0.08	0.03	0.1914	2.4014	-	0.8453	
C-I	1.0	1.080	0.08	0.03	0.1858	2.3758	-	0.0000	
C-e	1.0	1.0	0.08	0.03	0.1913	2.3013	-	0.8542	
C-W	1.0	0.0	0.08	0.03	0.1858	1.2958	-	0.0000	
C-H	1.0	1.090	0.08	0.03	0.1908	2.3908	-	0.8244	
A-e	1.0	0.35	0.08	0.03	0.1858	1.6458	-	1.2071	
S	1.0	0.35	0.08	0.03	0.1858	1.6458	-	0.8606	
C-F	1.0	0.03	0.08	0.03	0.1885	1.3285	-	0.8940	
지급시기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시	-	-	사유발생 시	

※ 2010년 5월 3일부터 Class C-I 및 Class C-H의 판매회사 보수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종류	판매회사보수율(연간, %)			
	2010.05.03~2011.05.02	2011.05.03~2012.05.02	2012.05.03~2013.05.02	2013.05.03 이후
C-I	1.437	1.324	1.211	1.080
C-H	1.456	1.337	1.218	1.090

※ 2011년 1월 10일부터 Class C-e의 판매회사 보수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종류	판매회사보수율(연간, %)			
	2011.01.10~2012.01.09	2012.01.10~2013.01.09	2013.01.10~2014.01.09	2014.01.10 이후
C-e	1.300	1.200	1.100	1.000

-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10.16 ~ 2015.10.15]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4.10.16 ~ 2015.10.15]
- 주3) 미설정된 클래스의 기타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은 설정된 클래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A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22	803	1,334	2,909
C1,C2,C3,C4,C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87	870	1,466	3,202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4	768	1,346	3,063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6	744	1,304	2,967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3	419	734	1,671
C-H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5	773	1,354	3,083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8	579	977	2,161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9	532	932	2,122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6	429	753	1,713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후취판매수수료를 0%(10년 투자 가정),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종류 C1, C2, C3, C4, C5의 경우는 전환되는 경우 예상되는 보수 및 비율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종류별로(A1, C1/C2/C3/C4/C5)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8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수변경 등에 따라 일치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1)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2)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장기주택마련저축 클래스(C-H)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장기주택마련저축>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비과세 혜택 가입시한	- 2012년 12월 31일까지(단, 소득공제 혜택은 2009.12.31 이전 가입자에 한함)
가입한도	- 분기 300만원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합계액), 선납 또는 후납 불가
배당소득 비과세	-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없는 경우 - 2012.12.31까지 가입자에 해당됨 * 단,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함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 •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천재 · 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2008.1.1 이후 주택취득자에 한함)
근로소득 공제	- 공제대상: 2009.12.31.이전 가입한 자로서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 8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내용: 근로소득자인 세대주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이 경우 주택자금 대출과 합산하여 산정함)
세액추징	- 이자 소득세 추징: 저축계약체결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함.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소득공제액 추징: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 추징. 다만, 실제 소득공제 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법정해지요건**

- 최초 가입 7년 후,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 → 요건 미충족시 법정해지 처리  
세대원을 포함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위의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상기 세제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1)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2) 매입·환매 절차**

매입	환매
<p>①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② 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① 오후 5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② 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4. 전환절차 및 방법**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①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②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③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④ Class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 \* 추가설정과 관계없이 최초매수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제3부. 요약 재무정보**

**1.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9기	제 8기	제 7기	

	(2015.10.15)	(2014.10.15)	(2013.10.15)
운용자산	33,722,495,323	46,135,511,363	68,829,794,076
증권	28,444,676,156	43,946,039,538	65,232,722,864
파생상품	174,851,129	-293,047,407	698,142,559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5,102,968,038	2,482,519,232	2,898,928,65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62,127,274	190,689,110	773,907,750
자산총계	34,084,622,597	46,326,200,473	69,603,701,826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57,251,920	147,874,833	1,018,579,485
부채총계	57,251,920	147,874,833	1,018,579,485
원본	65,945,763,133	79,063,695,829	105,089,816,894
수익조정금	1,411,893,770	22,183,737	-310,116,558
이익잉여금	-33,330,286,226	-32,907,553,926	-36,194,577,995
자본총계	34,027,370,677	46,178,325,640	68,585,122,341

손익계산서			
항 목	제 9 기	제 8 기	제 7 기
	(2014.10.16 ~ 2015.10.15)	(2013.10.16 ~ 2014.10.15)	(2012.10.16 ~ 2013.10.15)
운용수익	-5,561,519,158	-5,108,411,529	4,187,363,658
이자수익	35,376,440	50,701,405	74,965,324
배당수익	1,922,860,218	1,883,961,083	2,867,721,126
매매/평가차익(손)	-7,519,755,816	-7,043,074,017	1,244,677,208
기타수익	21,414	16,033,492	329,224,188
운용비용	54,622,626	30,046,928	28,105,00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54,622,626	30,046,928	28,105,000
기타비용	285,005,091	321,040,149	519,287,835
당기순이익	-5,901,125,461	-5,443,465,114	3,969,195,011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